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24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104048 불성실가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5. 11. 25.
판 결 선 고	2015. 12. 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부과처분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4. 11.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 7,756,70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1,565,25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14. 4. 30.자 가산금 2,440,4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24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A,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010. 11. 29. [redacted]시 [redacted]구 C 대 1044.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경락받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에서 정한 세율 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1. 6. 13. [redacted]지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영업의 종류를 식품접객업, 영업의 형태를 유흥주점영업으로 한 영업을 허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11.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이 유흥주점영업에 사용되고 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세율 1,000분의 100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58,105,510원(신고불성실가산세 7,756,7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1,565,25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2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6. 30. 기각되었다.

라. 피고는 2014. 6. 9. 원고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58,105,51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2,440,40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및 부지를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2014. 6. 16. 피고에게 고지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와 가산세 전액과 가산금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24

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부과처분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원고는 2014. 4. 30.자 2,440,400원의 가산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나,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24호, 제59조에서 규정하는 가산금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이 확정하는 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고지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5년 안에 건물에서 유흥주점영업이 이루어질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에 따른 취득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규정을 안내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농어촌특별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촌특별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5호에 따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24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에 불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법령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금부과처분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식

판사 정교형

판사 정유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24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4.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59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附屬土地).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12조의2(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② 고급주택·별장·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24

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로 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24

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

제86조의2(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

■ 구 농어촌특별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끝.